

생명보험회사 투자유가증권평가 및 이익배분과 관련한 구분계리에 관한 연구

오동일^{1*}

A Study on the Separate Account related with the Valuation of Investment Securities and Profits Sharing in Korea Life Insurance Company

Dongil-O^{1*}

요 약 본 연구는 보험감독규정과 보험회계준칙의 분리계정(구분계리 포함)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구분계리, 포괄적으로는 분리계정은 회계의 투명성을 증가시키고 보험회사의 주주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이익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구분계리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회계기준의 변화된 내용, 보험상품별 성과 구분, 보험상품별 경제적 실질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분리계정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보험계약자에 대한 공정한 이익배분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회사 상장시의 보험계약자 이익 보호와 관련된 논쟁의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ake a proposal of how to improve the separate account in Korean life insurance accounting and regulations. A separate account is required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accounting and fairness of dividing the profit between company and life insurance contractors. A separate account may be the first step to solve this conflict by clearing the profit sharing of shareholder's and contractor's of the insurance with dividend. The separate account should be designed to reflect the real economic consequences of insurance company and consider the real outcome of the performance-based insurance commodities. The separate account should contain the rules of IASs and KASs. If a separate account is successfully settled down, the portions of contractor's dividend and the dispute about initial public offering of insurance companies can be solved gradually.

Key Words : life insurance, separate account, a segment accounting, investment securities, insurance accounting standard

I. 연구배경 및 목적

2004년도에 논란이 되었던 생명보험회사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의 회계처리 문제는 무배당보험 판매가 급증하는 현실에서 당해연도 유배당·무배당보험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평가 및 처분이익을 배분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몫이 주주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많다는 근거에서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B00299)

¹상명대학교 금융보험학부

*교신저자: 오동일(odongil@smu.ac.kr)

비롯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매도가능 투자유가증권 등의 평가손익을 총손익 기준에서 처분손익 배분기준인 배당·무배당 평균책임준비금기준으로 변경하고 매도가능증권 등의 평가손익을 당해 매도가능증권 등의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지분과 주주 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배당·무배당 자산의 구분계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고 구분계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분리계정의 도입 등과 관련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회계기준서, 보험감독규정의 투자

유가증권의 평가 및 배분의 내용, 주주와 계약자간 이익 배분 등 분리계정과 관계가 깊은 유관 내용을 우선 고찰한다. 그리고 분리계정의 필요성과 의의를 살펴본 후 기업회계기준, 보험회계기준, 보험법, 보험감독규정의 구분계리와 분리 계정의 내용을 살펴본다. 보험계약자와 주주 간에 공정한 이익배분을 위한 분리계정의 의미와 효과, 현행 규정을 살펴보고 분리계정의 유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2.1 생명보험회사 투자유가증권 처분 및 평가 이익 관련 연구

보험회사의 투자유가증권평가 및 처분이익과 관련한 연구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배분 기준 개선안(2004년 6월)과 확정된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추가 개선방향을 제시한 김정동[3], 오동일[9]의 연구가 있다. 김정동은 투자자산 처분손익의 배분방법이 당기 방식이 논리적 정합성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은 부채항목과 자기자본 항목으로 분리하지 말고 자본조정항목으로 일괄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오동일은 투자유가증권의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매년 평가하는 누적평가방식은 전년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공정가액과 비교하는 평가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당해연도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배당 및 무배당 보험의 상품 비율의 변동에 따라 계약자 조정계정과 자본조정계정의 변동이 심하게 되므로 평균책임준비금 방식으로 배분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2.2 분리계정 관련 연구

분리계정과 도입과 관련된 연구로는 이봉주·최상태[11], 이근영·박태준·장강봉[10]의 연구가 있다. 이봉주·최상태는 미국과 일본의 분리계정의 운용대상과 규제에 관해 살펴보고 분리계정과 일반계정의 회계 및 재무제표 양식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근영·박태준·장강봉은 분리계정과 구분계리의 개념을 소개하고 미국, 일본, 영국의 분리계정 현황과 규제제도에 관해 살펴보고 분리계정도입시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당시는 변액보험과 같은 실적배당부상품의 도입, 손해보험의 개인연금보험과 같은 상품의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분리계정 및 구분계리와 관련된 초기의 연구로 현행 보험감독규정과 회계기준이 도입되

기 전의 연구로 변액보험이나 개인연금보험의 도입되고 유가증권평가기준이 변경된 현재의 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3. 현행 투자유가증권 평가 및 이익배분 관련 규정

3.1 기업회계기준서와 보험감독규정의 관련 내용

3.1.1 기업회계기준서의 규정

기업회계기준서에서는 유가증권을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업회계기준서[5]에서는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한다. 매도가능증권(유동자산으로 분류된 매도가능증권도 포함.)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자본항목(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으로 처리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항목의 누적금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은 자본조정항목으로 처리하고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자본항목의 누적금액은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시점에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한다.

이자율위험의 관리 목적 등으로 매도가능증권과 관련 부채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만을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관련 부채의 공정가액 변동액은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경영자의 경영성과와 경제적 사전이 기업에 미친 영향을 당기순이익이 적절하게 나타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을 당기손익에 포함하지 않고 자본항목으로 표시한다. 대부분의 부채는 아직 공정가액으로 평가되지 않으므로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액 변동액만을 당기손익에 포함하고 관련된 부채의 공정가액 변동은 포함하지 않음으로 인한 이익의 변동성(손익의 비대칭적인) 문제가 없도록 매도가능증권의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에 포함하지 않고 자본항목으로 표시한다.

3.1.2 2004년도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 관련 보험 감독규정 개정

■ 보험감독규정의 개정[1] 배경과 내용

과거 보험업감독규정상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은 「당해연도 총손익의 중 계약자 및 주주지분 비율(총손익의 중 계약자지분은 배당보험이익의 90%이상으로 산정 후 잔액은 주주지분으로 산정함)」을 기준으로 자본조정(자본)과

계약자지분조정(부채)에 구분 계상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과거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첫째, 주요 보험회사의 과거 총손익기준 배분비율을 보더라도 회계년도별 변동성이 크다. 따라서 평가손익 배분기준을 처분손익과 같이 변동성이 보다 안정적인 책임준비금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적정한 계약자지분의 표시를 위하여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을 자본조정 계정과 계약자지분조정으로 구분하여 계상할 필요가 있다. 계약자지분에 해당하는 평가손익의 경우 주주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아닌 점을 고려할 때, 명확한 재무정보 제공공차원에서 평가손익을 모두 자본조정 항목에 반영하는 것은 타당성이 낮다. 외국의 경우에는 배당·무배당보험 간에 구분·분리계정이 보편화되어 있어 평가손익을 주주·계약자간 배분할 필요성이 적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평가손익 중 처분 가정 시 계약자지분으로 귀속될 평가이익은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의 산정·배분기준을 일원화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은 향후 동 자산을 처분하였을 경우 실현될 수 있는 금액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의 산정 및 배분기준이 불일치해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이를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익 배분 시 매기 변동손익을 대상으로 배분하는 방식보다 취득가액과 평가가액의 차이인 누적손익을 대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보다 합리적이다. 매기 변동손익을 대상으로 배분하는 방식보다는 누적손익을 대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실제 실현이익(처분이익)에 대한 보유기간 동안 배당·무배당 상품별 기여도를 반영한 합리적인 배분방식이다.

그러나 개정된 규정은 다음과 같이 평가되고 있다. 첫째,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은 미실현손익에 불과하므로 이를 주주와 계약자간 배분하는 것은 큰 실익도 없이 분쟁만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평가손익은 기본계정에만 계상하고 처분 가정시의 계약자지분은 주석으로 공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둘째,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는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을 전부 자본계정으로 처리하는 방안에 비해 투자유가증권 가격 변동에 따른 생보사의 결산이익, 자기자본 및 지급여력의 급격한 변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4] 셋째, 투자유가증권의 운용결과에 따라 유배당 상품 보험계약자의 미래 배당이 감소 혹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자산 운용의 결과 발생하는 이익 뿐만 아니라 손실도 이해관계자에 공평하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산 운용성과에 따른 소비자의 보험회사 선택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고 보험회사의 구조조정을 촉진하

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넷째, 미실현이익인 평가손익에 대해서도 처분손익과 일원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에 계상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보험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다섯째,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은 확정부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 배분대상 손익을 매기 변동손익으로 하는 것이 기여도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도 있다. 또한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을 변동손익으로 하는 것이 누적손익으로 하는 것보다 회계기준에 더 부합하고 배분대상평가손익산정은 누적개념으로 하고 배분방식은 당해연도 배당보험책임준비금을 사용함으로써 평가손익 산정방식과 배분방식이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9]

여섯째,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의 최초 배부기준이었던 보유기간 평균 개념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상 책임준비금 자체가 누적금액으로 계약자와 주주의 기여도가 이미 반영되어 있고, 계약자간 부의 이전 문제,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계약자간 보유기간을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비판되기도 하였다. 또한 일부에서는 보유기간 평균 개념은 각 개인의 기여도에 비례하게 계약자 개인에 처분손익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유배당 계약자와 무배당 계약자를 각각 하나의 집단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이 종료된 계약자에 대해서도 배당이 지급되는 등 논리적 정합성과 형평성이 달성되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었다.[3]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 및 처분손익과 관련된 금감위의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비분과 주주 지분에 대한 완전한 해결은 어려운 실정으로 배당·무배당 보험상품에 대한 구분계리 제도를 도입하고 배당보험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험계약자와 주주의 기여도에 따른 이익배분을 위한 방안으로서 구분계리, 나아가 보다 넓은 의미의 분리계정에 대해 고찰한다.

4. 분리계정의 의의 및 내용

4.1 분리계정의 내용과 의의

분리계정(a separate account)이란 특정 보험상품을 다른 보험상품과 분리해서 회계처리하고 별도로 해당 자산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집적 해당 계정에 귀속시키는 방식의 회계방식을 말한다.[11] 그러므로 분리계정은 일반계정과는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되는 체계가 된다. 분리계정 이외에도 일반계정을 구성하는 하위 단위의 요소를 구성하여 보험상품의 특성을 고려한 상품 운용이 가능한

방식을 구분계리(a segment accounting)라고 한다. 구분계리가 발전해 분리계정이 되며 분리계정에서는 특정 보험상품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다른 보험상품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과 구분하여 관리한다. 그러므로 구분계리 나아가 분리계정이 정착되는 경우 보험계약자와 주주의 이해관계의 형평을 도모하면서 보험상품을 타 금융기관의 상품에 대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점이 있다. 구분계리와 분리계정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힘든 면도 있다. 구분계리는 일반계정의 하위단위 요소로서의 계정운영을 의미하는 반면 분리계정에서는 일반계정과는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 또한 분리계정에서는 보험종목이나 보험상품에 속하는 자산을 타 보험종목 또는 상품에 속하는 자산과 분리하여 운용하는 데 반해서 구분계리에서는 통합하여 운용하되 자산운용수익 등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리계정을 구분계리가 발달한 형태로 규정하되 별도의 구분이 필요가 없는 부분에서는 구분계리와 분리계정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4.2 생명보험회사 현행 분리계정의 내용¹⁾

4.2.1 보험업법 및 보험업법 시행령의 내용

생명보험회사의 분리계정과 관련된 규정은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회계처리준칙, 보험감독규정에 나타나 있는데 이들 규정에서는 분리계정 대신 특별계정(a special account)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보험업법의 특별계정 내용

• 특별계정의 설정과 운용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과 관련한 내용은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에 기술되어 있는데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별계정을 설정, 운용할 수 있는 계약으로는 연금저축계약, 퇴직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및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등이 있다.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이익을 동 계정상의 보험계약자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특별계정의 공시

보험계약자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시와 관련해서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의 운용방법 및 비율, 자산의 평가, 이익의 분배, 자산운용실적의 비교·공시, 운용전문인력의 확보,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배당보험의 구분계리

보험업법 제121조에서는 배당보험계약의 구분계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우선, 보험회사는 배당보험계약(당해 보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배당하기로 약정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계약자에 대한 배당기준은 배당보험계약자의 이익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여야 한다.

■ 보험업법 시행령의 특별계정 규정

보험업법 시행령의 분리계정과 관련된 규정은 제 3조, 제 52 조 ~56 조에 나타나 있다. 이들 규정에서는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는 보험회사 총자산의 범위를 담고 있고 제 52 조는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제 53 조는 특별계정자산의 운용비율, 제 54 조는 특별계정자산의 평가 및 순익배분, 제 55 조는 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등, 제 56 조는 특별계정의 운용전문 인력 확보의무 등을 담고 있다.

•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특별계정의 설정·운용과 관련해서는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하는 보험회사는 동항 각호의 구분에 의한 보험계약별로 별도의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계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별로 2 이상의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2006년 1 월 31일 현재 규정

- 특별계정자산의 평가 및 손익배분

특별계정자산의 평가 및 손익배분과 관련해서는 법 제 108조 제 1 항 제 3 호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을 제외한 자산은 제 1 호 이외의 자산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변액보험특별계정의 운용수익에서 당해 특별계정의 운용에 대한 보수 및 그 밖의 수수료를 차감한 수익을 당해 특별계정 보험계약자의 뒷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 특별계정 운용실적 공시

특별계정 운용실적의 공시 등과 관련해서는 매월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 구성 내역, 자산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험협회는 보험회사별로 보험회사가 설정하고 있는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등 자산운용실적을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특별계정(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된 특별계정을 제외한다)으로 설정·운용되는 보험계약의 관리내용을 매년 1회 이상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2.2 보험업감독규정의 특별 계정 내용

- 보험감독규정의 관련 규정

보험업감독규정의 특별계정 관련 내용은 제 5-6조, 제 5-7조, 제 5-13조, 제 6-9조, 제 6-21조, 제 6-22조, 제 6-23조, 제 6-24조, 제 6-25조, 제 6-26조, 제 6-27조, 제 7-44조, 제 7-66조, 제 7-79조 등이다. 이 중 제 6조의 내용은 보험회계와 관련된 부분으로 별도로 설명하고 나머지 보험감독규정상의 특별계정과 관련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

특별계정의 설정 및 운용은 제 5-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및 영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을 특별계정으로 설정·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연금저축생명보험계약, 연금저축손해보험계약
- 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계약 및 동법 부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 ③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하는 변액보험계약
-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세제지원개

인연금손해보험계약

- ⑤ 손해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장기손해보험계약

또한 특별계정은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보험계약별로 설정·운용하여야 하며 계약자배당 유무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며 변액보험계약은 둘 이상의 특별계정을 설정·운용할 수 있다.

- 특별 관련 보험 상품의 공시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험계약자 등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안내서, 판매상품별 상품요약서, 가입설계서, 사업방법서, 보험약관(변경전 보험약관 및 판매 중지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보험약관을 포함한다.), 금리연동형 보험의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 포함) 및 산출방법 등을 공시해야 한다. 그리고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 . 매월 말 현재의 특별계정별 자산·부채 및 자산구성 내역
- . 매일의 특별계정별 자산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 . 특별계정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
- . 변액보험 운용설명서

■ 보험업감독규정의 보험회계 관련 특별 계정 내용
한편 보험감독규정의 제 6 절 보험회계와 관련된 내용 중 특별(분리)계정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계정의 정의

보험감독규정 제6-21조에서는 특별계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액보험 특별계정”이라 함은 납입보험료에 대한 운용손익을 전액 계약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운용하는 특별계정을 말한다.
2.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이라 함은 손익구조는 일반계정과 동일하나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자산을 별도로 운용하는 특별계정을 말한다.
3. “계약자적립금”이라 함은 일반계정에서 투입한 보험료, 기간이자 등의 투입원본액과 특별계정 운용에서 발생한 운용손익과 배당금 등을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특별계정은 일반계정과 분리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 특별계정의 재무제표 표시 방법

특별계정과 관련한 재무제표는 보험감독규정 제6-23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① 특별계정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로 하여 총액으로 일반계정 대차대조표에 계상한다.
- ②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일반계정 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으며,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특별계정수익”과 “특별계정비용”으로 하여 총액으로 일반계정 손익계산서에 계상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6조 제1항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보험계약은 일반계정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계정과목별로 합산하여 계상한다.
- ④ 특별계정의 손익은 개별 특별계정별로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처리는 변액보험 특별계정과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을 구분하여 각 계정별로 전체를 합산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특별계정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서식은 감독원장이 정하도록 하였다.

• 특별계정 관련 생명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생명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는 자산·부채 및 자본으로 구분하고, 자산은 운용자산·비운용자산 및 특별계정자산으로, 부채는 책임준비금·계약자지분조정·기타부채 및 특별계정부채로,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

그리고 생명보험회사 손익계산서는 보험손익·투자손익·책임준비금전입액(또는 책임준비금환입액)·영업손익·기타손익·특별계정손익·경상손익·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법인세비용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 기업의 재무제표와는 달리 특별계정과 관련된 항목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다.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의 구분 계상

투자유가증권평가손익과 관련해서는 2004년 6월 16일 관련 규정의 개정에 따라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당해 매도가능증권의 취득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으로 하고 있으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평가손익은 지분법적용투자회사의 자본잉여금과 자본조정 합계의 누적 변동액(취득시와 평가시의 차액)중 지분비율 해당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평가손익은 당해 회계년도 배당·무배당보험 평균책임준비금 구성 비율을 기준으로 계약자지분조정계정과 자본조정계정으로 구분 계상하도록 하였다.

■ 보험감독규정의 특별계정 회계처리

• 특별계정 관련 재무제표 표시

특별계정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특별계정 자산”과 “특별계정 부채”로 하여 총액으로 일반계정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여야 한다. 납입보험료에 대한 운용손익을 전액 계약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하여 운용하는 특별계정인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일반계정 손익계산서에 표시하지 않으며, 손익구조는 일반계정과 동일하나 수급권 보장을 위하여 자산을 별도로 운용하는 특별계정인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특별계정수익”과 “특별계정비용”으로 하여 총액으로 일반계정 손익계산서에 계상한다. 그러나 ①, ④, ⑤의 보험계약은 일반계정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계정과목별로 합산하여 계상한다.

특별계정의 손익은 개별 특별계정별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회계처리는 변액보험 특별계정과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을 구분하여 각 계정별로 전체를 합산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감독원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특별계정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 특별계정의 손익조정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손익조정은 매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의 손익조정은 일반계정의 회계처리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개별 특별계정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평가한다.

- 변액보험 특별계정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9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
- 위 자산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기업회계기준서가 제정되지 않은 경우는 기업회계기준 및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을 말한다)에서 규정한 방법

• 특별계정 계약자 적립금의 적립

계약자 적립금은 일반계정에서 투입한 보험료, 기간이자 등의 투입원본액과 특별계정 운용에서 발생한 운용손익과 배당금 등을 가감한 금액이다.

변액보험은 회계연도말 개별 특별계정에서 발생한 손익을 전액 해당 보험계약의 계약자적립금으로 적립하며 원리금보장형은 일반계정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한 계약자적립금을 적립한다. 특별계정 운용으로 인한 손실은 특별계정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주주지

분에서 전액 보전한다.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특별계정 관련 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는 보험감독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시 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 회계처리기준을 별표에서 제시하고 있다. 별표에서 제시된 계정과목은 세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세부계정과목을 설정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분기별로 임시결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이 폐지되는 경우 감독규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특별계정에 대한 임시결산을 실시하고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를 30일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의 구분계상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이원분석기준의 이원별 손익산출기준 중 투자수지 배분기준을 준용하여 자본계정운용손익의 평가손익, 계약자 이익배당준비금에 해당하는 투자수지의 평가손익 및 배당·무배당보험의 평가손익으로 구분 후 자본계정운용손익, 배당보험평가손익의 100분의 10이하 및 무배당보험평가손익은 자본조정계정으로, 잔여 평가손익은 계약자지분조정계정으로 구분계상한다. 이 경우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과 지분법적용투자주식평가손실의 합계액에 계약자지분조정계정으로 계상되는 금액은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과 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4.2.3 보험회계준칙의 특별계정 내용

보험회계준칙[16]은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규정에 의거 보험업의 회계처리와 재무보고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보험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보험회계준칙에서는 분리계정을 구분계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분계정 관련 규정은 13조, 19조, 33조에 나타나 있다. 제 33조에서는 구분계정으로 자산의 운영과 손익의 배분 등에 있어서 일반계정과는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되는 보험계약에 대한 자산과 부채는 각각 구분계정자산 및 구분계정부채의 과목으로 하여 보험회사의 대차대조표에 총액으로 계상하고, 이에 대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13 조에서는 보험회사의 기타자산 중 구분계정자산, 19조에서는 보험회사의 기타부채 중 구분계정차, 구분계정부채가 언급되고 있는데 구분계정차는 구분관리되어야 하는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의 경우 구분계정

으로부터 공여받은 자금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간단히 언급되어 있다.

5. 우리나라 분리계정 개선방안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사업자는 보험업법에 따라 특정 보험계약에 대해 책임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특별계정을 설정하고 있다. 현재 특별계정 설정 대상이 되는 생명보험계약은 보험업법의 연금저축계약, 퇴직보험계약, 변액보험계약 및 그 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의 경우 분리계정은 특별계정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 주로 보험감독규정에서 감독목적으로 특별계정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별계정의 형태는 감독규정에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과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특별계정의 회계처리는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고 보험회계준칙 등에는 분리계정과 관련된 내용은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보험계약자와 주주의 공정한 이익배분을 위한 구분계리 또는 분리계정을 보다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 용어의 통일 필요

일반적으로 분리계정은 특정의 보험 종목 및 상품에 속하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다른 종목에 속하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과 구분하는 회계처리이다. 그리고 구분계리는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의 특성에 따라 투자전략을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일반계정을 구성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따라서 구분계리가 분리계정의 중간적인 형태이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업회계기준과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특별계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이 개념이 구분계정인지 분리계정인지가 불명확한 면이 있어 이를 통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 IAIS의 국제보험회계기준[19],[20]에 부응하는 구분계리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따라 부채의 시가평가제가 도입되면 보험부채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보험계약에 내재된 장래의 모든 현금 흐름을 계산해야 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개발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험부채의 공정가액 평가와 더불어 평가를 위해 금리 등 주요 변수에 대한 가정, 손익 및 자본의 변동성 및 민감도에 관한 정보를 공시할 필요성이 증대된다. 부채의 시

가평가제의 도입[6]으로 자산과 부채의 평가방식의 불일치로 인한 회계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보험회사의 경제적 실질을 보다 투명하게 반영함으로써 보험회사와 투자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분리계정 계약자 보호를 위한 명확한 근거 마련

분리계정의 법적 성격은 타 계정과의 분리에 따른 법률적 영향, 즉 보험사가 파산하는 경우에 계약자의 자산이 어떠한 방식으로 보호될 것인가 하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의 경우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분리계정 자산이 일반계정 자산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근거, 장치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즉 완전 실적배당부보험이나 기업보험과 같이 상품의 특성상 또는 계약의 귀속 주체가 명확한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일반계약자와 일반 채권자로부터 요구되는 부채의 상환 등과 관련된 청구권으로부터 보호되고 분리계정 계약자가 우선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엄격한 구분계리 필요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을 총괄적으로 운용한 후 분리계정의 대상이 되는 자산의 수익률을 기술적으로 분리해서 계약자 배당을 산출하기 위한 손익관리제도로서 적립자산에 대해서만 구분 계리를 실시하는 경우 이익배당을 위한 기준 설정을 위한 운영요강만을 갖추는 것에서 나아가 진정한 분리계정이 되기 위해 해당 계정의 수익과 비용을 명확히 하고 수익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고려가 필요하다.

• 감독규정의 특별계정의 정의와 분류의 개편

현행 감독규정 제125조에서는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으로 변액보험 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은 손익구조는 일반계정과 동일하나 수급권 보장을 위해 자산을 별도로 운용하는 계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규정의 특별계정의 정의와 분류는 특별계정 본래의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게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원리금보장형에서 언급하고 있는 퇴직연금계약 등의 수급권보장은 원리금보장형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고 일반기업에서 퇴직금을 제3자인 보험사로 위탁함으로써 기업도산에 따르는 수급권보장이 이루어지며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간의 수급권보장이란 특별계정의 형태를 불문하고 일반계정에서 분리됨으로써 이미 확보된 것이므로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특별계정의 정의와 분류는 용어의 변경을 포함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다.

• 보다 세부적인 공시 및 회계처리 기준 필요

특별계정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일반계정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다 자세한 공시와 회계처리기준이 필요하다. 특히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경우는 일반계정에 반영되지 않으므로(감독규정 제127조 제2항) 이에 대한 일반계정 재무제표 주석공시 강화 등으로 보험사 전체 재무상태 정보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현행 체제에서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재무제표 공시가 별개로 제시되어 계약자는 전체적인 정보 파악이 어려움이 있어 특별계정과 관련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기준의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 일반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특별계정의 세부사항 공시를 강화하고, 보험업 제93조의 계산 서류의 범위에 특별계정 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제출·공시하도록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변액연금보험의 경우 감독회계기준 뿐만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서도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찾아볼 수 없으며, 본질적으로 보험에서 회계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는 퇴직보험의 경우도 회계처리기준이 미비하다. 보험감독 규정과 보험회계준칙을 연결해 종합적인 분리계정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특별계정의 정의가 협소

현행 법규는 포지티브방식에 의해 특별계정 대상 계약을 특정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서만 특별계정을 운용하도록 하고 있어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사의 신축적 대응을 막고 있다. 보험사간 또는 타 금융권과의 경쟁에 따라 전통적인 보험 상품 이외의 신종 금융형 보험 상품의 출시 때마다 법규개정과 회계처리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특별계정의 정의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어 시장의 신 상품 도입에 맞추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유가증권 분류의 임의성 배제

과거에는 보험회사가 배당부 상품을 주로 많이 판매해 은행 등의 고유계정과는 달리 신탁계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계약자배당은 대부분 당기에 발생한 이익을 재원으로 하므로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사가 임의로 조절하지 못하도록 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의 분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감독규정에서는 별도의 유가증권의 분류 및 평가에 관해 규정이 없고 GAAP에 의한 보험업회계처리준칙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을 분류 및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감독목적 회계규정의 경우 분류의 자의성 및 그에 따른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 유동성 기준에 의한 유가증권의 분류를 수정, 보완해 정형화된 방식으로 유가

증권을 평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가증권 투자를 투자형태별(예 : 보통주, 우선주, 관계회사 주식, 국채, 지방채, 회사채, 주식형 수익증권, 채권형 수익증권 등)로 구분하고 채권 및 채권형 수익증권의 경우 투자대상별로 담보유무 등에 따른 위험등급의 기준을 제정하여 위험도에 따른 채권의 평가손익을 계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 위험을 반영한 유가증권 평가

유가증권 투자로 인한 이익배분을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유가증권의 등급에 따른 수익률을 공표토록 하여 유가증권의 평가손익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내에 유가증권 평가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정기적인 채권 위험등급의 공시업무 수행 등이 필요하여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심층적 검토가 필요하다.

- 구분계리를 통한 ALM 기법 개발

구분계리는 상품의 특성에 따라 부채를 분할하고 관리하는 ALM기법과 연계될 수 있다. 원래 법령에 의한 구분계리는 계약기간의 잉여금과 배당금의 공정한 배분을 위한 것으로 이 개념을 보험회사 자산부채관리기법으로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즉 무배당상품과 유배당상품, 단체보험과 기타보험 등 상품의 특성에 따른 구분을 통해 계약자의 이익배분 기대에 부응하면서 자산운용리스크를 줄이고 보험종류별 경영수지를 파악하며 듀레이션 관리 등 자산과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보험 상품별로 보험료방식, 보험기간, 이원분석, 자산운용, 현금흐름, 규모, 특성이 다른 부채의 혼합 정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배당금의 공정한 배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영관리를 위한 도구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 분리계정 운용을 위한 자산 구분 필요

현재 생명보험의 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간의 구분계리는 상품구분은 사전적으로 하고 있으나 자산구분은 사후적으로 지분에 따른 배분만 하고 있는 자산지분관리방식(mother funds)이다. 개인연금보험의 경우 부채는 사전적으로 구분하되 자산의 배분은 회사의 자산운용 형태별 금액에 책임준비금비례 부분을 곱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수준의 구분계리가 되기 위해서는 자산구분이 명확하게 될 필요가 있다. 즉 부채 특성에 따른 자산포트폴리오의 재구축, 구분별 자산 운용정책의 조절 등이 가능하도록 사후적인 자산 구분이 아닌 사전적

인 자산구분을 시행하여야 한다.

- 구분계리에서 완전한 분리계정으로 전환 필요

보험상품은 손익보조를 차단하고 상품 특성에 맞는 리스크 관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자산 구분별로 손익을 귀속시키는 구분계리에서 각 분리계정별로 자산을 운용하고 별도의 운용조직으로 운용하며 계정별로 별도 결산을 하며 재무회계 시스템으로 운용되는 분리계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장기적으로 분리계정을 도입함으로써 자산 운용목표가 다른 보험의 운용성과를 계약자에 귀속시키는 실적배당이 가능해진다. 자산운영, 손익구분의 명확화를 위해 다수의 보유계약을 보험종목별로 구분하여 관리하는 방법인 구분계리는 엄격한 재무회계의 틀에서 해당 보험항목을 분리하는 분리계정에 비해 회사 내부의 관리회계적 측면에 강하다. 그에 반해 분리계정은 구분(segement)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계정(account)의 분리 이므로 재무회계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투자자의 욕구에 부응하고 보험종류의 특성에 맞는 상품 설계와 자산 운용이 가능하게 하는 구분계리 제도에서 계정 간의 엄격한 구분을 바탕으로 하는 분리계정을 확대 발전 될 필요가 있다.

- 보험계리사의 역할 강화

분리계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 자산과 부채의 구분과 별도의 계정처리가 요구된다. 또한 자산 평가 뿐만 아니라 국제보험회계기준에 따른 부채의 시가평가도 요구된다. 이 경우 보험계리사가 보험부채의 가액, 책임준비금을 평가하고 회계사는 그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및 재무제표 상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보험부채와 관련된 별도의 의견서를 내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다.

- 생보사 상장에 대비한 구분계리의 본격적 우선 도입

일부 생보사의 기업 공개가 다가오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유·무배당 보험을 함께 판매하는 보험사가 배당보험의 이익으로 무배당보험의 손실을 보전하는 등의 보험상품 간 상호보조를 방지하고 주주와 계약기간의 이익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업 공개 전에는 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을 별도의 분리계정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우선은 배당보험에 대해서는 구분 계리(closed block)를 정착시킬 필요가 높다.

실적배당상품에 대해서는 분리계정을 운용하고 상장 후에는 비록 자산 재분류 시 저수익 또는 무수익 자산을 배당보험자산으로 분류함으로써 배당보험 계약자의 이익

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기존계약에 대한 자산구분의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완전한 분리계정의 실행은 불가능(사업비등은 배분기준에 따라 배분)하다는 등의 문제 가 있더라도 상장 후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분리계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해가능성을 고려한 공시제도 변경 필요

우리나라는 보험안내서, 상품요약서, 보험약관, 예정 이율 등을 공시하고 있고 변액보험의 경우에는 기준가격, 수수료, 운용설명서 등을 공시하고 있다. 이러한 공시는 보험회사,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공시제도는 양적인 측면에서는 풍부하나 공시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용어로 인해 보험계약자의 이해 가능성이 낮고 생명보험협회 이외에는 보험회사별 보험 상품 정보를 비교·공시하는 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구분계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보험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공시 정책이 필요하다.

• 보험 상품 특성을 고려한 분리계정 규제 필요

구분계리가 분리계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험 상품별 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분리계정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적배당형 상품에서와 같이 일반보험 상품의 자산운용규제와는 달리 자산운용규제를 대폭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리스크 관리를 위한 RBC의 정비[13]를 비롯해 해당 보험 상품 계약자의 투자리스크 부담에 비례한 공평한 투자손익 배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6. 결론 및 추후 연구 방향

보험계약자와 주주 간의 공정한 이익배분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몇몇 상품에 도입되어 있는 구분계리 또는 특별계정의 내용을 정비하고 보다 보완된 분리계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분 계리가 보다 발전된 형태인 분리계정으로 확고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산 부채의 평가 시 국제보험회계기준의 개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분리계정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한 규정의 강화가 필요하며 손익관리제도로서의 구분계리의 우선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보험감독 규정의 특별계정의 정의와 분류를 개편하여야 하며 보험 계약자를 위한 보다 세부적인 공시 및 회계처리 기준이 필요하다. 현행의 특별계정의 규정 방식을 변경하고 유가증권 분류의 임의성을 배제하기 위해 보험감독을 위한 유가증권의 분류기준의 재정비, 보험계약자의 이해가능

성을 고려해 공시 내용 정비, 보험계리사의 역할을 강화, 생명보험회사의 RBC제도를 강화, 보험 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분리계정의 설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생보사의 상장에 대비해 구분계리제도를 우선 도입하고 상장 후에는 엄격한 분리계정을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참고문헌

- [1] 금융감독위원회, 생명보험회사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익배분기준 개선 주요 내용, 2004.6.12
- [2] 금융감독위원회, 생명보험회사 보험감독규정 및 동 시행세칙 주요 개정내용, 2004.6.16
- [3] 김정동, “생명보험회사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익 및 평가손익 배분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 68 집, pp. 183-214, 2004. 8.
- [4] 김호중, “신희계제도의 의의 및 향후 과제”, 보험개발 연구 제 10권 2호, pp.3-41.
- [5] 김해식, 보험회계의 국가별비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4.6.
- [6] 김해식,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연구보고서 2001-11,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1.12.
- [7] 보험회사 장기투자자산 손익배분기준개선작업반, 보험회사 장기투자자산 손익배분기준 개선방향, 2004.4.29.
- [8] 생명보험협회, 변액보험의 이해와 판매, 2005.
- [9] 오동일, “생명보험회사 투자유가증권평가와 이익배분 제도의 개선방안”, 산업과학연구 제 15 권, pp.1-16, 2004. 10.
- [10] 이근영·박태준·장강봉, “분리계정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세부도입방안”, 보험개발원 보험개발연구소, pp. 127-151, 1997. 3.
- [11] 이봉주·최상태 “분리계정과 금리자유화” 보험개발 연구
- [12] 이홍무, 생명보험회사 상장시의 계약자 기여분, 월간생명보험, 2003.1.
- [13] 류건식·천영일·신동현, 생명보험회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2002.10.
- [14] 한국회계연구원, 기업회계기준공개초안 04-23호 자본거래, 2004.5.
- [15] 한국회계연구원, 기업회계기준토론서 04호,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의 평가, 2000.4.
- [16] 회계기준위원회, 보험업회계처리준칙(개정), 2003.11.
- [17] FASB, SFAS No. 120, Accounting and Reporting by mutual life insurance enterprises and by insurance enterprises for certain long-duration participating contracts-An amendment of FASB Statements No 60,

- 97, and 113 and Interpretation No.40, 1995.
- [18] FASB, Interpretation No.40., Applicability of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to Mutual Life Insurance and Other Enterprises.-An Interpretation of FASB Statement No.12, 60, 97 and 113.
- [19]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Draft Statement of Principles : Insurance Contracts", 2001.
- [20]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IASB), "Press Release : IASB issues Standard on insurance contracts", 31 March, 2004.

오동일(Dong-il O)

[정회원]



- 1984년 2월 :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학사)
- 1986년 2월 :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석사, 박사)
- 1991년 9월 : 삼일회계법인
- 1992년 4월 ~ 현재 : 상명대학교 금융보험학부 교수

<관심분야>

성과분석, 경영평가, 보험수가, 의료원가계산, 특수회계